

## 2019년도 제4회 직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9 8 14

###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

구 분	직렬·직급	채용분야	채용예정인원			직무내용
			계	일반경쟁	장애인 제한경쟁	
계			35	32	3	
일반직	일반관리7급	전 산	1	1	-	NCS대분류 '정보통신'
	기술관리7급	소각로 운영조	3	3	-	NCS대분류 '환경,에너지' (교대근무)
	기술관리9급	운 전 원*	2	2	-	차량 운전
	기술관리9급	시설관리	9	6	3	시설유지보수, 소각로운영 (교대근무)
	업무관리9급	선 별 원*	3	3	-	환경미화타운 선별업무
계약직	계약마급	수영강사	17	17	-	수영강습, 안전근무 (교대근무)

1. “ ” - “ (NCS)”
2. .
3. , .
4. \* , 가
5. 1 .

## 2

## 응시자격

가. ( )

구분	자격요건	
연령	○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우리공단 정년(만60세) 이하인 자 (만18세의 경우 2019.10.01.자로 임용되어 출근이 가능한 자)	
성별	○ 제한없음	
거주지	기술9급(운전원), 업무9급(선별원)	○ 공고 개시일(2019.8.14.)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“시흥시”인 자
	그 외 분야	○ 제한없음
취업제한	○ 공무원, 공기업, 기타 공공기관 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5년간 공단에 취업할 수 없다. ○ 채용 시 비위로 적발된 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단에 취업할 수 없다.	
결격사유	○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[참고사항 1] ○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[참고사항 1]	

채 용 분 야		자 격 요 건
일반관리7급	전 산	○ 정보보안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※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보안 업무가 가능한 자
기술관리7급	소각로운영	○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“에너지관리기사” 또는 “에너지관리기능장” 자격을 취득한 자 ※소각로운영 업무가 가능하고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
기술관리9급	운 전 원	○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1. 1종대형 운전면허 2. 경기도택시운전면허 ※시흥시 거주자이며,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
기술관리9급	시설관리	○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1.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2.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3. 전기기능사 이상 ※시설유지보수 또는 소각로운영 업무가 가능하고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
기술관리9급 (장애인전형)	시설관리	○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1.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2.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3. 전기기능사 이상 ※시설유지보수 또는 소각로운영 업무가 가능하고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
업무관리9급	선 별 원	○ 신체건강하고 재활용품 선별 업무가 가능한 자 ※시흥시 거주자
계 약 마 급	수영강사	○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‘수영’ 종목 자격증을 소지하고,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자 1.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이상 2.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3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이상 4.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. 노인스포츠지도사 ※교대근무가 가능한 자

※  
※  
※

가 .

가 가 .

### 3

### 선발 방법

구 분		선 발 방 법
1차 응시자격 확인 (서류제출)		○ 응시자격 적격유무만 확인
2차 필기전형	NCS 또는 인성검사	○ 고득점자 순으로 <b>3배수</b> 선발 (동점자 합격 처리) ○ N C S - 응시대상 : 일반7급(전산) / 기술7급(소각로운영) - 출제분야 · NCS(행정) : 문제해결, 대인관계, 직업윤리, 의사소통 4개영역 · NCS(기술) : 문제해결, 대인관계, 기술능력, 조직이해 4개영역 <b>※ 불합격 : 과목별 40점 미만 또는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</b> ○ 인성검사 - 응시대상 : 기술9급(운전원, 시설관리), 업무9급(선별원), 계약마급(수영강사) - 출제분야 : 정서안정, 감정통제, 책임감, 성실성, 적극성, 창의성, 자주성, 협조성, 의사소통 9개영역 <b>※ 불합격 :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</b>
3차 면접전형		○ 직무수행능력 평가(입사지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실시) <b>※ 불합격 : 종합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,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대하여 보통 이하로 평가한 때</b>
최종선발		○ 2차시험(50%)+면접시험(50%)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※

※

※

※ 가

가

가

### 4

### 응시원서 교부·접수 및 제출서류

가.

구 분	주 요 내 용
원서교부	○ 기 간 : 2019.08.14.(수) ~ 09.03.(화) ○ 교부장소 : 공단 홈페이지 ( <a href="http://www.shsi.or.kr">http://www.shsi.or.kr</a> ) 에서 다운

구 분	주 요 내 용
원서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 간 : 2019.08.20.(화) ~ 09.03.(화) 18:00 까지</li> <li>○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</li> <li>○ 접 수 처 :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18(근로자종합복지관 1층), 인사팀 인사담당자 앞</li> <li>※ 방문 접수시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전후로 방문 바랍니다.</li> <li>※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하며, 원서접수(우편접수의 경우 등기 도착일 기준)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</li> </ul>

구 분	제 출 서 류
응시원서 접수시 제출	<p><b>【공 통】</b></p> <p>1. 입사지원서 1부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※붙임 양식</p>
필기시험 당일 제출	<p><b>【분 야 별】</b></p> <p>▷ 일반관리7급(전산)</p> <p>1. 자격증 사본(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각1부.</p> <p>▷ 기술관리9급(운전원)</p> <p>1. 1종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.</p> <p>2. 경기도택시운전면허 사본 1부.</p> <p>3. 운전적성정밀검사(교통안전공단 발급) 원본 1부.</p> <p>4.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.</p> <p>▷ 기술관리9급(시설관리)</p> <p>1. 자격증 사본(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각1부.</p> <p>2.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(해당자만)</p> <p>▷ 업무관리9급(선별원)</p> <p>1.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.</p> <p>▷ 계약마급(수영강사)</p> <p>1. 자격증 사본(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각1부.</p> <p><b>【공 통】</b></p> <p>1. 보훈대상자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(해당자만)</p>

※  
※  
※

○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

- 입사지원서상 학교, 학업성적, 나이(생년),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
- e-mail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계정 기재 금지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나이, 성별, 출신지역,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거나, 이를 유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.

- : 2019.09.05.( ) 15:00
- -

## 5 전형일정 및 합격자 결정공고

구 분	주 요 내 용
필기전형 시행계획 공고	○ 일 시 : 2019.09.05.(목) ○ 장 소 : 공단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
필기전형 (NCS, 인성검사)	○ 일 시 : 2019.09.08.(일) ○ 대 상 : 응시자격 적격자 ○ 시험과목 : <b>NCS(7급) / 인성검사(9급, 계약마급)</b> - NCS(행정) : 문제해결, 대인관계, 직업윤리, 의사소통 4개영역 - NCS(기술) : 문제해결, 대인관계, 기술능력, 조직이해 4개영역 - 인성검사 : 정서안정, 감정통제, 책임감, 성실성, 적극성, 창의성, 자주성, 협조성, 의사소통 ○ 장 소 : 별도 공지
필기전형 합격자 결정공고	○ 일 시 : 2019.09.11.(수) ○ 장 소 :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
면 접 시 험	○ 일 시 : 2019.09.17.(화) ○ 대 상 : 필기전형 합격자 ○ 장 소 : 별도 공지
최종 합격자 결정공고	○ 일 시 : 2019.09.18.(수) ○ 장 소 :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



## 【 참고사항 1 】 결격사유

### ○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 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 - 마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
    - 바. 안전 감독 업무, 인·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
    - 사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. 다만,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.
   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  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【 참고사항 2 】 가산대상 자격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

○ 가산대상

구 분		우대사항 (가산비율 등)	확인방법	비 고
취업지원 대상자		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	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	-매과목 40%이상 득점자에 부 여  -가산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함.  -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.
고급 자격증 소지자	공인회계사, 세무사, 토지평가사, 공인감정사 자격증 소지자	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%	자격증 사본	
	기술사, 기능장 자격증			

○ 채용우대 지원자격

구 분	지 원 자 격
취업지원 대상자 (가점)	◇ 『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◇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◇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 ◇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◇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 ◇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2조

} 중 하나에  
해당하는 자